

방송용 위성궤도에 대한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ules regarding the orbit for satellite
broadcasting

신 홍 균(Shin, Hong-kyun)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 I. 서언
- II. 제1장 방송위성용 주파수 자원 현황
- III. 제2장 방송사업권과 주파수 이용권
- IV. 제3장 방송용 위성궤도에 관한 국제무선규칙
- V. 제4장 방송용 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한 국내 제도
- VI. 결론

서언

위성을 이용하는 직접 방송(DBS, 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이나 디지털 이동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위한 정지궤도 및 주파수는 희소한 자원으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이용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ITU 협정 당사국의 정부는 본 협약 및 국제무선규칙(RR, Radio Regulation)의 의무 이행의 주체인 주관청으로서, 해당 국민들이 필요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자명하다. 아울러, 그럼에 있어서 희소한 자원인 이들 주파수와 궤도를 자국민이 외국의 정부나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근본적인 임무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자국민의 주파수 이용 및 확보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법상의 절차 등의 제도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법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파법 등에 규정된 제도를 통해서 국제법상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 방송위성용 주파수 자원 현황

제1절 ITU의 방송위성용 주파수 계획 현황

1977년 세계전파통신 주관청회의(WARC-77)를 통하여 수신안테나 크기는 90cm, 대역폭은 27MHz, 궤도는 6 간격으로 하여 1, 3지역의 방송위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지역(북남미 지역)의 방송위성계획은 1983년에 지역전파통신 주관청회의인 RARC-83에서 결정하였다.¹⁾ 한편 방송위성의 feeder link 계획은 1, 3지역은 WARC-88에서, 2지역은 RARC-83 및 WARC-85에서 결정되었다[3,4]. ITU의 방송위성계획을 표2.1에 나타내었으며, 1, 3지역의 feeder link 중 14.5~14.8GHz대역은 유럽지역에는 분배하지 않았다.

1) 성향숙 외, “ITU의 방송위성계획변경에 관한 연구”, 전파연구소, 1990년 참조

표 1 ITU의 방송위성 계획

계획	지역	주파수 (GHz)	년도
BSS	1	11.7 ~ 12.5	1977
BSS	3	11.7 ~ 12.2	1977
BSS	2	12.2 ~ 12.7	1983
Feeder link	2	17.3 ~ 17.8	1983/1985
Feeder link	1 및 3	14.5 ~ 14.8	1988
Feeder link	1 및 3	17.3 ~ 18.1	1988

1992년 세계전파통신 주관청회의(WARC-92)는 디지털 방송기술의 도입 등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선된 파라미터 적용을 통해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 전파규칙 부록30(BSS)과 30A (BSS의 feeder-link)의 1, 3지역 방송위성계획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술적인 가능성을 ITU-R이 연구토록 결의하였다. 199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95)에서는 방송위성계획 개정을 위한 적용기술, 시기, 방법 등 개정지침을 개발하고 지침에 의거한 연구를 ITU에 지시하였다(결의 531). 이어 WRC-97에서는 1, 3지역 방송위성계획에 대한 개정 가능성 검토 원칙에 따라 1, 3지역 국가의 아날로그 채널을 최소 10개 정도로 증가시킬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WRC 결의 532).²⁾

한편 WRC-2000에서는 1, 3지역의 방송위성계획을 개정하였으며, 1지역에는 해당 10개의 채널을, 3지역에는 국가당 12개의 채널을 할당하였다.³⁾

- 계획개정에 적용된 기술기준은 수신안테나크기 60cm, 디지털 변조 및 27MHz 대역폭을 적용하고, 운용 위성망의 보호비를 강화하였다.
- 위성송신 EIRP를 감소하였으나, 현재 운용중인 방송위성망의 경우 기존 위성 EIRP 값을 유지도록 하였다.
- 또한 방송위성망간 간섭 분석에 있어 방송위성간 궤도 이격이 9도이상의 경우는

2) 박정렬, “세계전파통신회의를 마치고”, 전파진흥, 2000년도 8월호

3) 강상선 외, “국제표준화 회의 준비”, <http://www.tta.or.kr/StdInfo/jnal/jnal67/htm/11-1.htm>

고려하지 않았다.

제2절 국내의 방송용 위성주파수 자원

우리나라 무궁화위성(동경 116도) 주변의 방송위성 자원 현황은 표2와 같다. 채널에 대한 주파수 현황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편파와 관련하여 CR은 우원형 편파, CL은 좌원형 편파, LE는 선형 편파를 의미한다. 대역폭에 있는 D는 디지털 방송 방식을, A는 아날로그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grouping은 한 국가가 동일 또는 인접한 궤도에서 여러 가지 빔을 이용할 때 grouping을 하며, 이때 grouping된 빔의 동시 운용은 불가한 것으로 전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동경 116도) 주변의 주요 방송위성 현황 (WRC 2000 이후)

국가명	빔명	궤도 위치	편파	채널	대역폭 (MHz)	비고
베트남	VIN32500	107E	CR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D)	
일본	0008S-3N	109.85E	CR	1, 3, 5, 7, 9, 11, 13, 15	27(A)	
일본	J10985	109.85E	CR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4.5(D)	
일본	J11100	110E	CR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4.5(D)	
일본	J1110E	110E	CR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7(A)	
한국	KO11202D	113E	CL	2, 4, 6, 8, 10, 12	27(D)	
한국	KOR11200	116E	CL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D)	
한국	KO11201D	116E	CL	2, 4, 6, 8, 10, 12	27(D)	grouping
한국	KOR11201	116E	CL	2, 4, 6, 8, 10, 12	27(A)	
라오스	LST3WOLD	116E	L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3(D)	grouping
라오스	LST3WELD	116E	LE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3(D)	
라오스	LST3COLD	116E	L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3(D)	grouping
라오스	LST3CELD	116E	LE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3(D)	
라오스	LST3NOL1	116E	L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3(D)	grouping
라오스	LST3NEL1	116E	LE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3(D)	
라오스	LST3EOLD	116E	L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33(D)	grouping
라오스	LST3EELD	116E	LE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3(D)	
미국	MRA33200	121.8E	CL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7(D)	
미국	GUM33100	122E	CL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D)	
중국	CHN19000	122E	CR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7(D)	
중국	CHN20000	122E	CL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D)	grouping
라오스	LA028400	122.2E	CR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33(D)	

표 3에서는 전파규칙 부록 30에 있는 방송위성 채널별 주파수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 방송위성 채널별 주파수 현황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1	11727.48	2	11746.66	3	11765.84	4	11785.02
5	11804.20	6	11823.38	7	11842.56	8	11861.74
9	11880.92	10	11900.10	11	11919.28	12	11938.46
13	11957.64	14	11976.82	15	11996.00	16	12015.18
17	12034.36	18	12053.54	19	12072.72	20	12091.90
21	12111.08	22	12130.26	23	12149.44	24	12168.62

2. WRC2000에 따른 추가 자원

방송위성용 채널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1지역(유럽, 아프리카)은 국가별 10개 채널, 제3지역(아시아, 오세아니아)은 국가별 12개 채널이 되도록 방송위성업무계획을 개정하기로 WRC-97에서 결정하였다.

WRC 2000에서는, 제1지역 및 제3지역에 방송위성용주파수 및 궤도를 추가로 분배하는 RR APS30/30A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 위성망을 계획중인 라오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표단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공조하여 우리나라는 동경116도에서 6개 채널을 추가로 분배받게 되었다.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경116도에서 총12개 채널을 방송위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WRC-2000에서 추가로 확보된 우리나라 위성방송용 빔 KOR11200에 대한 제원은 다음과 같다.

4) 박정렬, 전계 보고문

- 범명 : KOR11200 (디지털)
- 궤도 : 동경 116
- EIRP : 59dBW (채널 2, 4, 6), 59.1dBW (채널 8, 10, 12, 14, 16, 18, 20, 22, 24)
- 안테나 크기 : 60cm
- 대역폭 : 27MHz
- 편파 : CL (좌우형 편파)

제2장 방송사업권과 주파수 이용권

제1절 방송사업권 규제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인쇄매체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신문매체 보다도 방송매체에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은 허가제를, 신문사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매체에 대하여 소유집중의 배제 및 겸영금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공성의 확보, 더 나아가 제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규제 등이 행하여지는 정당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방송규제의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電波公物論 또는 公共所有論

전파(주파수)는 공공자산이므로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규제기구)이 허가의 책임을 진다는 가장 전통적인 이론이다. 이것은 국민에게는 본래 전파를 사용할 권리가 없지만, 공공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공의 광범위한 규제가 미치고, 공정성 등의 요구도 인정된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전파의 국가독점사상에 기초하여 방송을 공영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미 민영방송(상업방송)체계가 정착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논거가 종래 방송사업의 규제를 위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통신법상의 중요한 방송규제기준, 즉 '공공의 이익, 편의 또는 필요'(public interest, convenience or necessity)라는 이른바 '공익기준'(public interest standard)은 바로

이러한 전파공물론 또는 공공소유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放送周波數의 稀少性論

방송은 무선전파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바, 사용가능한 주파수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신을 피하여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주파수대를 정하여 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파수대는 유한하고 희소하며(물리적 희소성), 또한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의 수 보다는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는 유한성 내지는 희소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사회적 희소성). 따라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국민의 '수탁자(trustee)로서, 방송의 다양성, 방송의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은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레드 라이온(Red Lion)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할당된 주파수 보다 방송하고자 하는 개인이 많을 때에 모든 개인이 말하거나 쓰거나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 대하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방송의 다매체·다채널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은 방송채널의 수를 현저히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에 따른 방송규제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이론적 근거의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는 신규 방송국을 허가할 때에 아직도 상당한 다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상황이고, 뉴미디어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보편적 방송매체로서 지상파방송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이 그 규제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3. 放送의 社會的 影響力論

방송에는 인쇄매체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즉, 방송은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하는 호소력이 높은 매체이며, 동시에 가정에 직접 전달되어 수신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도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점에서 인쇄매체와 달리 특별히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방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전체에 즉시 그리고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 방송의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론'은 미국의 '페시피카'(Pacifica)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지지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논거가 '방송기준위원회'(BSC, Broadcasting Standards Council)의 설치를 통한 성과 폭력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연방헌법재판소의 1981년 제3차방송판결에서 제기되었다. 즉, 방송주파수의 다소여부에 불문하고, 방송의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경쟁시장에 있어서 방송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은 규제되어야하며, 반독점법을 통하여 매체독점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전술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형식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방송의 위력과 대중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입장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 대하여 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하여 특수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논의는 엄밀하게는 논증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의 정보제공능력의 관점에서 방송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신문의 영향력도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2절 주파수 이용권 논의

방송의 자유의 제한 논리의 발전과 적용 과정에서 방송 자유권의 법적인 성질이 논의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전에, 미국의 경우, 방송권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산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허가 기간은 한정된 것이며, 방송사업자는 재허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허기에 대한 기대는 반드시 이익이 법적 보호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FCC는 방송 재허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방송권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권리 내용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식을 헌법상의 일반 원칙에 두고 있는 권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방송권을 그와 같이 기본적인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에 대한 허가 규제 등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방송을 통한 사업권, 즉 방송사업권에 대한 규

제는 그 방식에 있어서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각국의 방송 관련 법령들은 방송사업권에 대한 허가 제도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의 허가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1. 주파수 이용권 관리를 통한 방송사업권 관리 사례 : 프랑스

시청각통신법(*la loi de l'audiovisuel*) 22조 및 30조는 "시청각통신 최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CSA)는 … 주파수 이용을 허가한다", 29조는 지상파 전파에 의한 음성방송서비스의 방송을 위한 주파수의 이용을 CSA가 허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이용과, 시설의 설립 및 이용 모두를 동시에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CSA가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다.⁵⁾

즉, 전파의 송출과 서비스의 제공 권한이 이 하나의 허가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1982년 방송법에서는 주파수 이용 허가(무선국 허가)와 방송국 시설의 이용허가(말하자면 방송사업을 위한 편성권 허가)를 분리해서 규정했었다. 주파수 이용을 국가가 시설 이용허가를 방송위원회 (당시의 CNCL)이 담당하는 이원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1986년 시청각통신법에서 하나로 통폐합 된 것이다.

2. 미국

연방통신법 제307조는 "공공의 편익, 이익 및 필요에 따라서, 무선국 허가(station license)를 부여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방송사업권의 허가는 무선국 허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우리나라 및 해외 국가의 경우에 방송사업권 허가는 무선국허가로 완성된다는 점, 그리고 방송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주파수의 희소성에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방송사업권 허가는 곧 주파수의 이용권, 즉 무선국 허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방송사업권을 가지면 해당 방송을 위한 무선국의 이용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사업권은 그 방송을 위한 주파수이용권, 즉 해당 방송용

5) Christel Galvada 외, "Droit de l'audiovisuel", Paris, 1997, 제1장 참조 ; Anne Meyer-Heine, "Le droit europeen des émissions de télévision", Paris, Economica, 1997

무선국의 허가이기는 하나, 주파수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다른 주파수, 다른 방송용 무선국의 이용권이 그 방송사업권에 수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별도의 이용권/무선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방송용 위성궤도에 관한 국제무선규칙

제1절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사전 공표 및 조정 규칙

1. 위성망의 사전 공표와 주관청의 의무

무선규칙 제9조는 수립하고자 하는 위성망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공표하여 관련 주관청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무선규칙 9.1은 위성망 운용 개시 5년 내지 2년전에 사전 공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위성망은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위성망과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성망의 둘로 나뉘어진다.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성망의 사전 공표

- 자신의 기존 또는 계획중인 위성망 또는 지상국에 유해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주관청은 4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없으면 반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WRC 95에서는, *basic objections*이었으나, WRC 97에서 *basic*이 삭제됨) 그에 따라 당사자 주관청들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 문제 극복이 어려운 경우, 위성망을 계획 중인 주관청은 기존 통신망의 보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위성망의 사전 공표

- 9.5B 사전공표자료를 회람을 통해 접수하고, 자신의 기존 또는 계획중인 위성망 또는 지상국에 유해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주관청은 자신의 의견을 통하여야 한다.
- 9.5B.1 여기서 조정 요망 대상이 되는 지상국은 첫째, 지상서비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며, 또한 BSS 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대역을 이용하는 BSS 용 위성국을 운용하려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지상국, 둘째, 주파수 할당표상의 주석에 의해서 조정이 요망되는 무선국, 또는 셋째,

주파수 할당표상의 주석에 의해서 다른 주관청의 동의가 요구되는 무선국을 가리킨다.

2. 위성망의 조정과 주관청의 의무

무선규칙 제9조의 2절은 사전 공표된 위성망의 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4개 부속절에서는 조정 요구 대상이 되는 주관청, 조정 요청의 접수, 조정 요청에 대한 행동 및 후속 조치의 각각의 처리와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가. 조정 요구 대상 및 신청

무선규칙 제9.4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무국에 통보하거나 주파수를 이용하기전에 9.27에 따라 판별되는 조정 대상 주관청들과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위성망에 대해서 주관청이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9.7: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위성망의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경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다른 위성망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단 반대 방향으로 통신하는 지구국간의 조정에는 해당안됨)
- 9.8 : BSS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려는 FSS용 정지궤도 우주국이 AP S30에 따른 무선국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조정, 등에 대해서는 WRC 99이후에 정함
- 9.9 : Appendix 30에 따르는 BSS 용 feeder link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정지궤도 FSS 용 송신 우주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WRC 99이후에 정함.
- 9.11 : 지상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그 대역이 Plan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을 사용하는 BSS 용 우주국을 운용하려는 경우, 지상 서비스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
- 9.12 위의 무선국이 비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위성망에서의 무선국인 경우, 정지 및 비정지궤도 모두의 위성망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단 반대 방향으로 통신하는 지구국간의 조정에는 해당안됨)
- 9.13 위의 무선국이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위성망에서의 무선국인 경우, 비정지궤도 위성망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단 반대 방향으로 통신하는 지구국간의 조정에는 해당안됨)
- 9.14 위의 무선국이 위성망에 포함된 우주국인 경우, threshold value가 초과되

는 지상서비스 무선국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 9.15 위의 무선국이 비정지궤도 위성망에 포함된 전형적인 지구국 또는 특정한 지구국인 경우, 우주서비스 및 지상서비스 모두가 동등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지상국으로서, 지구국의 조정 영역이 타국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상국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
- 9.16 위의 무선국이 비정지궤도 위성망에 포함된 지구국의 조정 영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서비스용 송신국인 경우
- 9.17 : 우주서비스 및 지상서비스 모두가 동등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1 GHz 이상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 지구국 또는 전형적인 이동 지구국을 운용하려는 경우에, 그 지구국의 조정 영역이 타국의 영토를 포함하는 경우에 지상국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 (WRC 99까지 유예)
- 9.17 A : 특정 지구국을 운용하려는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통신하는 지구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을 개시 ; 첫째, 다른 지구국이 양방향 모두에 있어서 우주통신서비스와 동등한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지구국이고, 운용하려는 지구국의 그 대역에서의 조정 영역이 타국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구국들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둘째 다른 지구국이 양방향 모두에 있어서 우주통신서비스와 동등한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지구국이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는 운용하려는 지구국이 다른(제3의) 지구국의 조정 영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구국들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AP S30A의 계획에 따르는 주파수 대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 9.18 : 우주서비스 및 지상서비스 모두가 동등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1 GHz 이상 대역에서의 지상 서비스용 송신 무선국으로서 지구국의 조정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구국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9.16 및 9.19 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안됨.)
- 9.19 : BSS와 동등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지상서비스용 송신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경우에, BSS 지구국에 대해서 조정을 개시함 (BSS가 AP S30의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다. 조정 요청에 대한 행동

- 19.50 : 9.7 내지 9.21에 따라서 조정 요청을 접수한 주관청 및 자신이 관련된다 고 판단하여 조정 요청을 받으려고 통보한 주관청은 검토를 개시하여야 한다.

- 9.51 : 9.7 내지 9.9에 따라서 조정 요청을 접수한 주관청은 4개월 이내에 자신의 동의를 통보하거나, 또는 반대를 통보하여야 한다. (9.52) 조정 요청에 대해서 반대를 통보하는 경우, 그 이유와 자료를 조정 요청 주관청 및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파수 배정으로서 반대 사유가 된 그 주파수 배정에 관한 자료를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자료가 지구국의 조정 영역내에 있는 것으로서 반대방향으로 통신하는 지상국 또는 지구국에 관한 것인 경우(즉, 자신의 반대 사유가 된 주파수 배정이 그러한 지상국 또는 지구국의 주파수 배정인 경우), 기존 무선국의 경우, 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사용될 지상국의 경우, 또는 향후 3년 이내에 사용될 지구국의 경우에만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배정 통보로서 취급된다.
- 9.52B : 합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대 방향으로 송수신하는 지상국 또는 지구국의 관할 주관청은 합의된 무선국에 관한 자료를 주파수 배정 통보 절차로서 사무국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은 반대방향으로 송수신하는 무선국 중 기준의 지상국 또는 기지국이나 또는 3년 이내에 사용 개시될 지상국 또는 기지국에 관한 자료만을 주파수 배정통보로서 간주한다.
- 9.52C : 9.11 내지 9.14 및 9.21에 따른 조정 요청에 대해서 4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주관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9.11 내지 9.14에 따른 조정 요청에 대해서 4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주관청의 경우에는 9.48 및 9.49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3. 등록원부에의 주파수 배정 통보 및 기록 심사

무선규칙 11.2는 송신 무선국 및 그와 관련되는 수신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배정은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무선규칙 제11.29조 및 그 이하에 따른 등록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할당표 및 RR의 준수 여부 심사 결과가 공정적인 경우, 주파수 배정은 원부에 기록된다. 부정적인 경우, 해당 주파수 배정은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간섭을 안 끼치며, 또한 보호받을 권리도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만 등록원부에 등록되며, 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등록되는 것이고, 주파수 할당표 및 RR을 준수하는 주파수 배정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즉각 송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 규칙 제11.37조: (주파수 조정 절차의 준수 여부 심사) 즉, 주파수 조정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주파수 배정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조정이 완료된 주관청명도 같이 기록된다.)

- 규칙 제11.37.1조 타 주관청과의 합의가 일정 기간동안만에 대해서 얻어진 경우에, 등록원부에는 그 유효 기간이 명시된다. ;
- 규칙 제11.37.2조 BSS 우주국용 주파수 배정이 등록원부에 등록되는 경우, 그 등록 사실은 결의 507에 따른 합의 및 관련 계획상의 결정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이 등록 원부의 비고란에 함께 명시된다. : 그러나, 부정적인 경우 반송된다. (즉, 조정 절차는 완료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주파수 배정이지만, 그 주파수 배정이 다른 주파수 배정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 (다만 11.32A 또는 11.33이 적용되는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조정 절차가 실패라고 조정개시 주관청이 선언한 경우다.)

규칙 제11.32A / 11.38조 : 주파수 할당표 및 RR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심사와, 조정 절차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심사 결과 긍정적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파수 배정에 일으킬 수 있는 간섭 가능성 또는 그 주파수 배정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하여 긍정적인 경우, 그 주파수 배정은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조정이 완료된 주관청명이 같이 기재된다. 또한 조정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주관청명도 같이 기재된다.) 심사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반송된다.

- 규칙 제11.32A조, 제11.38조 및 제11.41조 : 규CLR 제11.38에 따라 부정적이어서 반송되었었으나, 주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로 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차후에 그 배정이 부정적 심사결과의 요인이 된 주파수 배정과 함께 사용된 후 적어도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사무국이 인지한 후에 임시 등록에서 확정 등록으로 변동된 주파수 배정에 일으킬 수 있는 간섭 가능성 또는 간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즉 조정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용하여 본 결과 문제가 없는 주파수 배정이 등록원부에 기록되는 경우임)
- 규칙 제11.32A.: 조정 요청자료가 사무국에 의해서 주간 회람에 공표되었으나, 아직 주파수 배정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그 공표의 순서에 따라 사무국이 행한다.
- 규칙 제11.39조 : 세계 또는 지역 할당 및 분배 계획 및 관련 규정들과 준수 여부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주파수 배정은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 규칙 제11.39조, 제11.39A조 및 제11.39B조 : 11.39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정

적이면 반송되지만, Appendices S27의 기술적 원칙들을 준수하는 통보가, 계획에 명시된 주파수 할당 및 등록원부에 긍정적 배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파수 배정에 대한 보호를 Appendices S27에 명시된 것에 따라 취하면, 그 통보는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반면에 그러한 보호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할당 계획을 준수하는 여하한 주파수 및 11.39A에 따라 등록된 주파수에 유해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명시하는 표시와 함께 기록된다.

- 규칙 11.39조 및 제11.39C조 : Appendix S26의 기술적 원칙들을 준수하지만 할당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주파수 배정 통보는 Appendix S26의 Part III에 따라서 심사된다.
- 규칙 제11.39조 및 제11.39D조 : 위의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부정적이면, 할당 계획을 준수하는 여하한 주파수 및 11.39C에 따라 등록된 주파수에 유해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명시하는 표시와 함께 기록된다.
- 규칙 제11.41조 : 주파수 할당표 및 RR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심사와, 조정 절차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심사 결과 긍정적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파수 배정에 일으킬 수 있는 간섭 가능성 또는 그 주파수 배정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정적이어서 반송되었으나, 주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로 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차후에 그 배정이 부정적 심사결과의 요인이 된 주파수 배정과 함께 사용된 후 적어도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사무국이 인지한 경우, 그 주파수 배정 통보는 임시 등록에서 확정 등록으로 변동된다.
- 규칙 제11.47조 : 단 사용되기 전에 사무국에 통보된 주파수 배정은 등록원부에 임시로 기록된다. 임시로 기록된 주파수 배정은 통보에 명시된 일자에 사용개시되어야 한다. 주관청은 그 사용 개시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용 개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은 그 임시 기록을 취소한다.; (11.47 / 11.44) 위성망의 우주국의 경우, 임시로 기록된 주파수 배정이 사용되어야 하는 일자는 주간회람에의 사전 공표 후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주관청의 요청에 의한 연장은 최대 2년이다.; (11.44B) 단 그러한 연장은 다음 경우에 가능하다 - 결의 49에 따른 성실한 노력 자료가 제출되고, S9조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또한 주관청이 연장 사유로 제시한 것이 발사 실패, 발사 지연, 위성설계 변경에 따른 지연, 위성설계 규격 달성상의 문제, 사무국의 지원하에 수행되는 조정의 지연, 주관청/운용자의 통제 영역 밖의 재정적 상황, 및 불가항력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1.48) 주간회람에의 공표 후 5년

및 연장 기간 후에, 주관청이 그 주파수 배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간 회람에 공표 효과는 취소된다. (단 사용개시로 예정된 일자의 최소한 3개월 전에 그러 한 취소를 주관청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11.47 / 11.45) 지상국에 대한 주 파수 배정의 사용 일자는 주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 다.

제2절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6)

계획된 자원을 이용하는 위성망과 비계획된 자원을 이용하는 위성망의 국제등록 절차는 구별되며, 다음과 같다.

가. 계획된 자원(Planned resources)

계획된 위성자원은 전파규칙 부록30, 30A, 30B에 명시되어 있다.

- 계획된 제원 내에서의 사용 : 국제전기통신연합 통고 후 사용
- 계획된 제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별도의 조정을 통하여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 주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비계획된 자원(Non-Planned resources)

사전공표, 조정공표, 통고 및 등재의 과정을 통하여 위성망 국제등록이 이루어진다. 사전공표 및 조정공표에 대한 규정은 RR 1권 9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통고 및 등재는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공표(API)

전세계 주관청에게 신규 위성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목적으로 수행되며, 전파규칙 부록 4의 양식에 따라 위성망 정보를 위성운용 예정일 7년전 이내에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BR)에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대역 추가 또는 궤도위치를 ±60이상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API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공표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BR은 해당 주관청에 보완을 요구하며, 주관청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사전등록이 유

6) “위성궤도 및 주파수자원 연구보고서”, 2004.12 한국전파진흥협회 참조

효하게 된다.

2) 조정공표(Coordination Publication)

사전공표 접수 후 6개월 이후부터 접수가 유효하다. 주관청에서 사전공표자료와 동시에 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BR에서 접수는 하나 이 경우의 조정자료 접수일은 사전공표자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후가 된다.

사전공표자료 접수 후 24개월 이내에 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공표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지구국 조정의 경우는 위성망 등록과 별개로 사전공표 없이 조정자료를 조정대상국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등록한다.

조정공표 후 4개월 이내에 각 국의 주관청에서 이의 제기문서를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공표 주관청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자료를 제출한 신규 위성망의 운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RR 9조는 다른 주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조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I절 : 위성망 또는 위성시스템의 사전공표자료

IA절 : 2절의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성망 또는 위성시스템의 사전공표자료

IB절 : 2절의 조정절차를 따르는 위성망 또는 위성시스템의 사전공표자료

II절: 조정 수행절차

IIA절: 조정의 필요 조건(requirement) 및 요구(request)

IIB절: 조정 요구 접수 통지

IIC절: 조정 요구에 대한 처리(action)

IID절: 조정요구에 대한 무응답, 무결정, 부동의시 처리

3) 통고 및 등재(Notification & Recording)

조정 절차를 수행한 후 운용 예정일로부터 3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통고자료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ITU BR은 통고서 양식에 기재된 정보(AP4)를 심사한다. 기술적 심사내용은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다른 주관청과의 조정 절차의 준수 여부, 및 다른 주파수 할당으로의 유해한 간섭해소 여부 등이다. 심사가 완료될 경우 BR은 해당 주파수 할당을 주파수등록원부인 MIFR(Master of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에 등재한다.

통고 및 등재관련 전파규칙 11조는 I절 통고, II절 통지의 심사 및 주파수 등록일부에 주파수 할당의 등재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방송용 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한 국내 제도

전장에서 살펴본 국제무선규칙에 근거하여 정부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주파수의 국제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국제무선규칙을 준수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반면에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위성궤도를 이용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상충될 수도 있다. 현행 전파법이 그 사례를 보여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사례와 규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럼에 있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국제조정의무의 이행

1. 국제조정의무의 이행과 이용권의 성립

현행 국내 전파법 제39조 내지 41조의 조항은 국제등록 및 조정의무의 국내 이행으로서, 즉 위성궤도 등의 국제등록 및 조정을 완료한다는 무선규칙에 따른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1조 2항은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과 확보에 따른 위성궤도 등의 할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제조정의무를 이행하는 정부는 위성궤도 등의 이용권을 국내인에게 부여할 권리가 발생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절차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여기서, 위성궤도 등의 할당은 그 궤도를 이용하는 무선국 허기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선국 허가는 우주국이 발사, 운용되는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

라 허가), 제41조에 따라 할당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위성망은 국제전파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아야 한다.

2. 이용권 부여 대상

전파법 제38조에는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위성궤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할당 대상은 우주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 전파법 2조 12호는 할당대상이 되는 위성망을 "우주국 및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11호는 지구국을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논의되었던 위성 DMB 수신기의 경우에는 전파규칙상 지구국에 해당되나, 현재 국내법규에는 적절하게 대응되는 무선국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파법 제4조(전파에 관한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도 지구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신 전용이기 때문에 전파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선국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용권 부여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종론이다.

아울러, 건축물 또는 자연물에 의해 위성이 보이지 않는 지역(음영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운용되는 보조지상방송용으로 운용되는 Gap Filler의 경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은 지구국에 해당되며, 송신하는 부분은 지상국에 해당된다. 수신하는 부분은 역시 전파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송신하는 부분은 지상국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법규상 적절하게 대응되는 무선국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Gap Filler의 무선국 종별 및 이용권 부여 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위성망으로 할당받은 주파수와 동일한 대역을 지상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아무리 대역이 동일할지라도 주파수 이용의 장소, 방식, 이용의 주체 및 목적 등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전파법 체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G/F의 송신 주파수의 경우 이용 방식, 이용의 주체 및 목적이 위성으로 할당된 주파수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당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고 보는 것이 종론이며, TU 미디어의 위성 DMB용 Gap Filler의 경우 이용권 부여 대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었다.

제2절 국제조정의무의 이행과 국내법에 따른 이용권의 부여

본절에서는 국제조정의무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보고, 그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조정의무의 이행의 실례로서 현행 전파법의 제41조2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조항은 위성망을 확보한 자에게 그 이용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용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국제조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1. 전파법 41조2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

전파법 제41조 2항은 위성궤도 등이 확보된 때에 신청자에게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위성궤도의 확보를 위한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한다는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취지와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위성궤도의 이용권을 갖게 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의 해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가능하다.⁷⁾

- 1안) RR에 따라 Master Register에 등재된 경우
- 2안) 사업자의 최선의 노력이 확약되는 경우
- 3안) 위성궤도의 실제적, 물리적인 점유 상태

이 중에서, 1안은 무선규칙을 가장 확실히 이행하는, 즉 다른 위성망 등에 간섭 영향을 주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없애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ITU 등록 원부 기재는 신청자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수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3안의 경우, 위성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또 는 실현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판단하여 주파수나 궤도의 과정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무선규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장점이 있다. 즉,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한 신청자의 국제조정의무이행으로서 가장 확실한 것이지만, 할당을 받고서 위성을 발사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한 이 방식을 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쟁 사업자들이 실제로 이용내지는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내 사업자에게만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7) "위성망 할당대가에 관한 연구", 위성망 할당대가 연구위원회 보고서, 2004.12, 통신위 성우주산업연구회 참조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안들에 비해서, 2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권이 부여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업자의 최선의 약속을 근거로 할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여 위성궤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확보로 해석되는 시점 및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2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1안과 3안이 그러한 이유에서 부적합한 경우, 위성궤도 확보의 개념 또는 구성 요건은 특정한 사실관계의 객관적 확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확보의 개념과 구성요건이 설정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위성궤도 등이 확보된 시점은 조정 대상 주관청들이 조정에 동의하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시점이겠지만, paper satellite의 경우에 그러한 서면 인정이 없을 때에는 조정의 필요가 없음을 정통부가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궤도의 확보 시점의 결정은 어느 정도는 정통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위성 궤도 등의 확보된 때"의 의미를 주요 조정 대상 위성망과 조정을 완료하고 위성망 국제등록을 위한 통고 서류를 제출한 시점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조정대상인 국제등록증인 위성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위성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운용중이거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있는 위성망
- 운용계획이 없이 국제등록 신청한 위성망(paper satellite)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위성망의 경우, 설계된 전송제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성망간 간섭량 분석이 힘들어 조속히 조정을 완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천번째에 해당하는 위성망 중 상호 간섭이 심각하여 두 위성망의 동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조정 동의를 받아야 향후 국제등록이 가능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주요 조정 대상 위성망) 즉, 주요 조정 대상 위성망과의 조정이 완료되는 경우 전파규칙 규정상 목표하는 위성사업 추진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위성망 국제등록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통고절차 수행을 위해 통고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위성 궤도 등의 확보한 때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조정의무 이행의 적정성 평가

전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방안은 SK Telecom의 위성 DMB용 위성인 이른바 “흔별” 위성 사례에 적용된 바 있다.⁸⁾

해외 사업자의 위성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감독 의무 및 이에 관련된 국제조정을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감독 책임이 수행되는 방식은 국가 정부의 고유한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ITU 무선규칙이 위성망의 확보, 위성망의 실질적인 설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이용권을 국가 정부가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국제전파간섭의 방지 및 조정에 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인 절차는 재량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의 위성망 케도 및 주파수 이용 허가의 조건으로서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이 부과되며, 사업자의 무선국 이용에 관한 허가 제도는 국내 정부가 갖는 고유한 권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 론

ITU의 현장 및 그에 근거한 무선규칙은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위성통신 기술 및 주파수 자원의 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지구정지궤도 자원은 각국 정부 및 각국 사업자들에게 최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치열한 확보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동 자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을 정부가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국내입법화 내지는 직접적인 적용이라는 전형적인 방식 이외의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즉, 국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해외 경쟁력이 고려되면서, 국제규범을 적정하게 이행하는 유연성과 제도적인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2004.3 “위성DMB용 주파수 할당공고”, 정보통신부, 참조

요약문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케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케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위성방송,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무선규칙, 위성주파수, 케도, 주파수 조정, 국제법

Abstract

The right to the spectrum frequency and orbit is required for the broadcasting by satellite, whether the broadcaster might be given any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the broadcasting. The reason is that the ITU Convention and Radio Regulation provide very specific and detailed rul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frequency spectrum and orbit. Outstanding issue arises as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characte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adio Regulation, in the way of letter to letter should be discouraged w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vis-a-vis foreign competitor is taken into account.

Key Word

satellite broadcasting, ITU, radio regulation, frequen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law